

[사 건 명] 행심 2019 - 93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5.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은 ○○학교 학생이고, 피청구인은 위 초등학교장으로, 피청구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라 합니다) 심의결과에 따라 2019. 5. 15. 청구인의 000에 대한 학교폭력 건에 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의거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9. 5. 17.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서 2019. 6. 2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 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왜소한 체격의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고, 상대학생(**초 5학년 000)은 체격이 큰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으로, 2살의 나이 차이와 체격 차이가 있고, 한 달 가까운 상대학생의 폭력과 괴롭힘을 방어하기 위해서 단 한번 상대학생을 소심하게 발로 차고 “바보, 멍청이, 똥땡이, 메롱” 이라고 한 것으로, 이는 자기 방어적 행동임에도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쌍방폭행으로 치부해서 청구인을 가해학생으로 처벌하는 비상식적인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해학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사안조사는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객관적인 입장에서 피해사실과 피해정도를 육하원칙에 따라서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책임교사는 자신의 주관을 개입해서 ‘너도 한 대 때렸으니 가해자야’ 라고 하는 등 학교폭력 가이드 지침을 무시 하였고, 학폭위 심의과정에도 청구인의 명 자국에 대한 판단을 전담 기구 교사의 의견에 치중하여 사실 그대로 확인하지도 않고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가해학생이 무서워 수영장 가는 것을 거부하고, 가해학생 만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로 쌍방 폭행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쌍방폭행으로 판단해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학년 차이와 체격 차이만으로 학교폭력의 쌍방여부가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학교폭력은 1회, 2회 등의 횟수로 가해여부를 결정짓는 것도 아니며,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한정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상대학생의 폭력에 자신을 보호하고자 했던 행위라 주장하더라도 상대학생이 고통을 호소한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고, 학폭위에서는 청구인 측의 진술서와 서면의견서, 상대학생 측의 진술서와 서면의견서, 각 학교 전담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청구인도 상대방을 발로 차고 꼬집고(신체폭력), 바보, 멍청이, 똥땡이(언어폭력)라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서 피해학생이면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판단하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의 전담기구 교사는 사안 조사를 위하여 최적화된 전문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 간에 발생한 사건임을 감안해서 가해, 피해 학생이 아닌 관련학생으로서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였고, 청구인 측이 제출한 모든 자료와 **초에서 받은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학폭위에 제출하여 위원들이 모두 살펴보았으며, 청구인의 보호자 서면진술서도 위원들이 숙지하였고, 청구인의 명 자국은 전담기구 소속 전문교사가 조사과정에서 판단한 소견을 학폭위 위원에게 그대로 보고한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자료 원본이 위원들에게 제출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였다.

다. 학폭위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황적인 부분과 청구인이 피해학생이면서 가해학생인 점, 아직 어린 학생이라 상황판단이 미숙한 점, 상대

방의 행위에 대하여 맞대응을 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판 단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청구인과 상대 학생의 확인서, 서면진술서, 목격학생들의 각 확인서 등 증거자료, 청구인 및 피청구인 대리인에 대한 각 구술심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과 상대학생 000은 2019. 4.초경부터 @@@@체육관 수영장에서

다툼이 있었고, 2019. 4. 24.경에도 서로 발로 차고, 꼬집고, 욕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과 상대학생의 학년 및 체격차이가 커서 쌍방폭행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상대학생의 주기적, 지속적 폭력과 괴롭힘에 대하여 방어행위를 했던 것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학년, 체격차이가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쌍방폭행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실제 청구인도 상대학생이 발로 차면 자신도 차고, 꼬집으면 자신도 꼬집고, 욕을 하면 자신도 바보, 똥땀이 등 욕을 했다고 하는 바, 이는 단순한 방어적 행위나 소극적 저항행위로만 볼 수 없고,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한정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사안조사 책임조사가 객관적 입장에서 조사하지 않고 주관을 개입하여 조사하는 등 학교폭력 가이드 지침을 무시했고, 학폭위 심의과정에도 청구인 명 자국에 대한 판단을 전담기구 교사의 의견에 치중하여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전담기구 교사는 사안조사를 위해 최적화된 전문교사로서 학생 눈높이에 맞춰 사안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본 사건 관련 청구인 측이 제출한 모든 자료와 **초에서 받은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학폭위에 제출되어 위원들이 살펴보았으며, 청구인의 명 자국도 전담기구 소속

전문교사는 조사과정에서 판단한 소견을 그대로 보고한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자료 원본이 위원들에게 제출되어서 합리적 판단을 하도록 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중한 처분이라고 하므로 살피건대,

학폭위에서는 청구인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가해학생조치별 적용기준에 따라 심각성 낮음 1점, 지속성 낮음 1점, 고의성 없음 0점으로 판정했고, 반성정도와 화해정도는 청구인 측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 학생과 화해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통 각 2점으로 판정하여 총 6점으로 판단하였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황적인 부분과 청구인이 피해 학생이면서 가해학생인 점, 아직 어린 학생이라 상황판단이 미숙한 점,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맞대응을 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이 아니라 가장 가벼운 1호 ‘서면사과’ 처분으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위 법률 제17조의 의거하여 재량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